

이 용 계 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위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 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9%), 감경(6%)		
	일반수급자			15% 부담		

-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6,480		77,970		48,690			

4.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5. 기타

-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의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분1부를 제공 한다.
- ③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약 및 이용료 등 수납에 대한 사항

제2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26조(이용료 등 수납)

1. 이용료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2.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를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2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3)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